의안번호 (१९)

제목:대전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 대화동 페기물처리시설 면적 변경 -

제출년월일: 1995년 5월 일

제 출 자:대전광역시장

◇ 제 출 사 유

- 대전직할시 고시 제226호('93. 12. 3)로 기시설 결정한바 있는 도시계획시설 (페기물처리시설) 에 대하여,
- 대전직할시 고시 제216호('94.11.30)로 갑천변 고속화도로 (대로2-20호선 폭42m)및 이면도로(소로2 오정99호선 폭 8m)의 결정에 따른 도로 편입용지를 제척키 위하여,
-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2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코저 함.

◇ 주 요 골 자

○ 시 설 명: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

ㅇ 용 도 지 역 : 일반공업지역

○ 변경결정면적 : 기정 3,994m² → 변경 3,240m² (감 754m²)

○ 신 청 자 : 대덕구 대화동 371-4번지 호성산업(주)

대표이사 이 겸 수

◇ 추 진 경 위

○ '93. 12. 3 : 도시계획 시설결정 (폐기물처리시설)

ㅇ '95. 3. 16 :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신청

(호성산업(주)대표 이겸수 → 대전광역시장)

ㅇ '95. 5. 4 :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입안 및 공람공고

~ '95. 5. 20 (주민의견 청취)

◇ 주민의견 청취

o 공 람 자 :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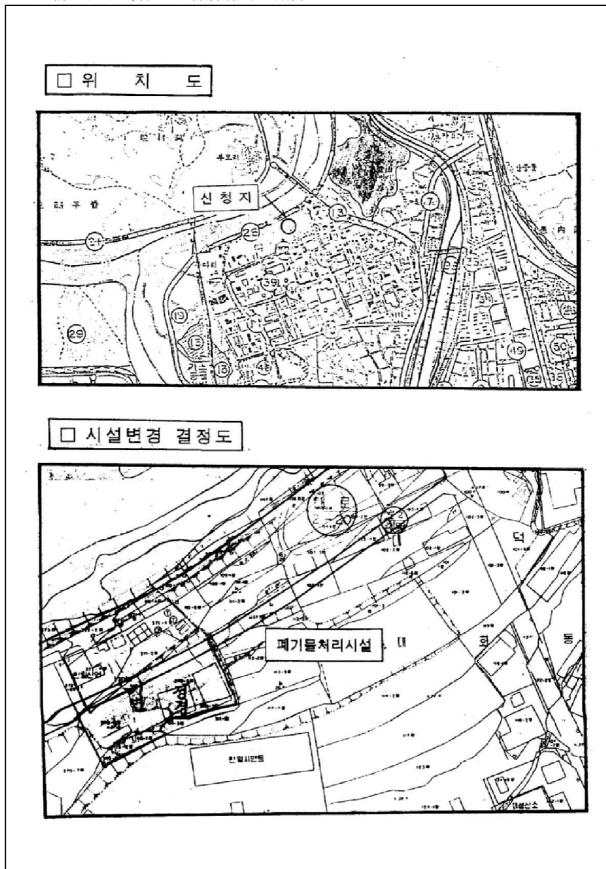
ㅇ 공람자 의견 : 없 음

◇ 토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검토의견

- 본 도시계획시설 변경건을 대전직할시 고시 제226호 ('93. 12. 3)로 시설결정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 대전직할시 고시 제216호('94.11.30)에 의거 시설결정된 갑천변 고속화도로 및 이면도로(소로2 오정99호선 폭8m)에 저촉되는 도로 편입용지(754㎡)를 제척토록 시설 변경결정 신청한 사항으로 중복 결정된 부분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아래조서와 같이 변경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세부	위 치	면 적 (㎡)			нJ	
		시설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n)	고
변경	폐기물 처 리 시 설	특 정 폐기물 처리시설	대덕. 대화 동 370-2 번지외 4 필지	3, 994	감) 754	3, 240	용지	편입 제척 54㎡



대전광역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

심 사 보 고

1995. 6. 1.산업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5. 5. 27. 대전광역시장

나. 회 부 일 자 : 1995. 5. 29.

다. 상 정 일 자 : 제42회 대전광역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5. 6. 1), 상정, 질의,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계획국장 김 정 욱)

가. 제 안 이 유

- 대전광역시 고시 제226호('93. 12. 3)로 기 시설 결정한바 있는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 대전광역시 고시 제216호 ('94. 11. 30)로 시설결정된 갑천변 고속화도로 및 이면도로에 저촉되는 편입용지를 제척키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함.

나. 주 요 골 자

ㅇ 시 설 명 :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변경 결정

ㅇ 용도지역 : 일반공업지역

o 변경결정면적 : 기정 3,994m² → 변경 3,240m²(減 754m²)

○ 신 청 자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4 호성산업

(주)대표 이겸수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 상 도)

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앞의 내용과 같음.

나. 검토의견

- 금번에 제출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폐기물 처리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대덕구 대화동에 소재한 호성산업(주)의 부지가 '94년 11월 30일로 고시된 갑천변고속화도로 및 이면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도로용지가 일부편입되게 됨에 따라 이를 제척하여 변경결정코자, 공람공고를거친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키 위한 사안으로써
- 현지의 상황을 보고드리면, 당해지역은 대전2공단 및 갑천변과 연접해 있고 제2공단 조성후 일반공업지역으로 고시가 된 후 현재는 약 60여개의 업체가 입주되어 있는 상태로 이중 일부공장의 진입로는 갑천 제방도로를 이용해 오고 있는 실정으로서 갑천변고속화도로 계획선에 기존 제방도로가 편입되어 있어 공장의 진입로가 없어지게 됨에 따라 별도의 이면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하였으나 폐기물 처리시설로 시설결정된 호성산업의 부지 약754㎡(8M×94M)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임.
- 전반적으로 의견 청취안을 검토해 볼 때 현지의 여건상 폭 8m의 이면도로 개설이 불가피하여 시설결정을 한 것으로 기 시설결정 한바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중 일부가 제척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5. 검 토 요 지

없 음

6. 소위원회 심사내용

없 음

7.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8. 심 사 결 과

원 안 가 결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